

1988.7.8
제 1416 호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김 용 래
편집인: 공 보 관 윤 두 영
전 화: 731-6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35-3337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2255 호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3
제 2256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개정중개정규칙	31
제 2257 호 : 서울특별시지방전문직공무원관리규칙개정규칙	32
◎ 고 시	
제 597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37
◎ 구 고 시	
제 596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37
제 1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고시	38

(이면계속)

구 판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888

구 공 고

제 11 호 : 도시계획사업 완료공고	39
제 2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39

사 령

인사발령토지	40
4 급공무원전보	40
4 급공무원전보	41
7 급이하공무원징계및경고처분	41
5 급기술직공무원전보	41

규 칙

◎ 서울특별시 규칙 제 2255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중 "동 규정 별표 2 의 5 제 2 호 해당 간호원과 동 별표 제 3 호의 나무 해당 간호원"을 "동 규정 별표 2 의 5 제 2 호 해당 간호사와 동 별표 제 3 호의 나무 해당 간호사" (이하 "나무 간호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 제 2 호중 "별표 2 의 5 제 3 호 나무 해당 간호원 (이하 "나무간호원"이라 한다)"를 "나무간호사"로 하며 동조 제 2 항 제 1 호, 제 2 호 및 동조 제 3 항 제 1 호, 제 2 호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하고, 동조 제 4 항중 "구청장 및"을 삭제하고 "간호원과"를 "간호사의"로 하며, 동조 제 6 항 본문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를"로 한다.

제 16 조 제 2 항 제 1 호중 "동별표 제 4 호 나무 해당 약사, 동 규정 별표 2 의 5 제 2 호 해당 간호원과 동 별표 제 3 호 나무 해당 간호원"을

"나무약사"동 규정 별 표 2 의 5 제 2 호 해당 간호사와 나무 간호사"로 하고, 동조 제 3 항 제 1 호, 제 2 호, 동조 제 4 항 제 1 호, 제 2 호 및 동조 제 5 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제 25 조 제 1 항 단서 및 표중 "간호원"를 각각 "간호사"로 한다.

제 26 조 제 3 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구원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나. 지도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석사학위는 당회 각 위 취득후 임용 의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 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3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4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 27 조 제 2 항 단서중 "조산원, 간호원"을 "조산사, 간호사"로 한다.

제 28 조중 “간호원은”을 “간호사는”으로 한다.

제 33 조제 2 항중 “서울특별시안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안에서 일정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 48 조제 1 항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를”로 하고 “간호원에”를 “간호사에”로 한다.

제 49 조제 1 항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로 한다.

제 51 조제 3 항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무담당공무원

세정과, 세무지도과

제 68 조제 3 항중 “40 점”을 “35 점”으로, “20 점”을 “17.5 점”으로 한다.

제 78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6 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은 총 평정점 45 점을 만점으로 하되, 간경력은 45 점, 육경력은 36 점, 병경력은 9.60, 경정력은 8.40 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제 81 조제 1 항제 1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 항중 “시보

공무원이 될자” 다음에 “(시보 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다만, 6 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제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 제급에서 받은 성적(연구사, 지도사는 그 기간내에 6 급이하 공무원으로 받은 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의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8년이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점의 6 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제 85 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받은 포상중 제 1 항 각호의 1 에 상응하는 포상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 포상은 공무원평정규칙(총리령)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포상으로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는 포상은 당해 제급에서 받은 것(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6 급

및 7급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그 포상이 2개이상일 때에는 그 중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것 1개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 87 조 제 1 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이 정기 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원창구등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할 기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 32 조 제 1 항 단서와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 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및 다른 시·도 지방공무원 재직시 공무원수당 규정 제 12 조 제 1 항, 제 3 항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행정기관의 민원실등

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배급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하며, 서울특별시 소속 6급이하공무원, 시도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재직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의 대상이 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해당계급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제 88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4 항 후단중 "22 점"을 "19 점"으로 한다.

②제 1 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정부작성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 6급·7급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5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 31 조의 3 제 1 항, 제 2 항, 제 5 항 및

<p>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점점은 전평점단위기간의 평점점으로 본다.</p> <p>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점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균 $\times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균 $\times 20/100$)</p> <p>2. 6급 ~ 7급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점점 : (최근 1</p>	<p>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균 $\times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균 $\times 40/100$)</p> <p>3.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점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균 제 91조 제 1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중 "국사 및 국민윤리"를 각각 "국사, 국민윤리"로 하고, 기계 직렬란 다음에 운전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문 전	국어 (한문포함) 국사, 국민윤리 도로교통법		국사, 국민윤리, 도로교통법
-----	--------------------------------	--	--------------------

[별표 8]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중 "임용예정직급"을 "임용예정제급"으로 하고, 임용

제급란의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하며,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교원	교수 (3년 이상)	교수	부교수	초교수	전임장사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 대상자		24 호봉	16 호봉 이상	12 호봉 이상	11 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중 대학 봉급액란 적용 대상자		17 호봉 이상	11 호봉 이상	7 호봉 이상	6 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 호봉 이상	13 호봉 이상	9 호봉 이상	8 호봉 이하

[별표 18] 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별표 19] 중 임용예정계급단의 “진료원”을 각각 “간호사”로 하고, 그
 육공무원의 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등학교		24 호봉 이상의 교원	16 호봉 이상의 교원	12 호봉 이상의 교원	11 호봉 이하의 교원
------	--	--------------------	--------------------	--------------------	--------------------

[별표 20] 중 농림직 (농업, 임업포함)란을 농업직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
 이 하고, 농림직란 다음에 임업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직	생물학개론 재배학원론	토양학, 수도작, 전작 중 1 과목	생물, 작물(식 용작물)토양이론	
임업직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임정학, 삼림보호학중 1 과목	생물, 조림	삼림보육, 수목, 조림중 1 과목

[별표 21] 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별표 22] 중 공보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보관	5, 6 급	홍보 계획 담당 관	공보관
-----	--------	------------	-----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7]의 제목 “당해직급별 관련된 자격구분표”를 “당해직급에 관
 련된 자격증구분표”로 하고, 동표의 가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 급내지 9 급

직렬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행정, 세무	공인회계사, 세무 사, 변리사, 토지 평가사, 공인감정 사, 변호사, 판세사		
전 산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사 1 급	정보처리기사 2 급
사 석	정 보 사	준 사 석	
전 기	전기기술사, 전자기술사	전기기사 1 급, 전자기사 1 급	전기기사 2 급, 전자기사 2 급

계급 직렬	5 급	6 급 , 7 급	8 급 , 9 급
기 계	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사 1 급 기계기사 1 급	건설기계기사 2 급 기계기사 2 급
축 산	수 의 사		
보 건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환 경	환경관리기술사	환경기사 1 급	환경기사 2 급
조 선	조선기술사	조선기사 1 급	조선기사 2 급
선 박	조선기술사, 1 · 2 급항해사, 1 · 2 급기관사, 1 급통신사	3 · 4 급항해사, 3 · 4 급기관사 2 급통신사	5 · 6 급항해사, 5 · 6 급기관사, 3 급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토 목	토목기술사	토목기사 1 급 측지기사 1 급	토목기사 2 급 측지기사 2 급
건 축	건축사, 건축기술 사	건축기사 1 급	건축기사 2 급
지 적	국토개발기술사	지적기사 1 급, 측지기사 1 급	지적기사 2 급, 측지기사 2 급
주 지	국토개발기술사	지적기사 1 급, 측지기사 1 급	지적기사 2 급 측지기사 2 급
통 신 사	통신기술사	전파통신기사 1 급	전파통신기사 2 급
통 신 기 술	통신기술사	유선설비기사 1 급 무선설비기사 1 급	유선설비기사 2 급 무선설비기사 2 급
전 송 기 술	통신기술사	유선설비기사 1 급 무선설비기사 1 급	유선설비기사 2 급 무선설비기사 2 급

비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에 위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제 1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시에 위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 가점점수를 할 수 없다.

[별지제 40호 서식] 내지 [별지제 43호 서식] 및 [별지제 4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85조제 2항, 제 3항, 제 37조제 1항단서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

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③ (근무성적 평가적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점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점점내상기간에 포함되는 경력만한 기간별 근무성적평점점은 그 평점점이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분이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점적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④ (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 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지방공무원 1급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별표 6)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전직시험응시자격증
및 전직시험면제자격증구분표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직렬	계급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직류				
사 서	사 서		정사서	준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수의사
선 박	일반선박		1 급 · 2 급 항해사	3 급 · 4 급 항해사	5 급 · 6 급항해사
			1 급 · 2 급 기관사	3 급 · 4 급 기관사	5 급 · 6 급기관사
			1 급통신사	2 급통신사	3 급통신사소형선박조종사
	선박항해		1 급 · 2 급 항해사	3 급 · 4 급 항해사	5 급 · 6 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1 급 · 2 급 기관사	3 급 · 4 급 기관사	5 급 · 6 급기관사 3 급통신사소형선박조종사
지 적	지 적		지적기사 1 급	지적기사 2 급	지적기사 2 급

비고 : 옆 표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구분표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직 령	직 급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직 류	직 계	직 계	직 계	직 계
			국트개발기술사 (직 직)	외제기사 1급	외제기사 2급
<p>비고: ① 윗표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p> <p>② 6급의 경우는 6,7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8급의 경우는 8,9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6월의 기간 임용의정직급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p>					
나.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직 령	직 급		5 급 이 상	6 , 7 급	8 , 9 급
	직 류	직 계	직 계	직 계	직 계
사 서	사 서	사 서	경 사 서 (8)	준 사 서 (4)	준 사 서
수 의	수 의	수 의	수 의 사 (5)		
선 박	일반선박		1 급 항 해 사	2 급 항 해 사 3 급 항 해 사 (2)	4 급 항 해 사 (2) 5 급 항 해 사 (2) 6 급 항 해 사 (4)
			1 급 기 관 사	2 급 기 관 사 3 급 기 관 사 (2)	4 급 기 관 사 (2) 5 급 기 관 사 (2) 6 급 기 관 사 (4)
			1 급 통 신 사	2 급 통 신 사	3 급 통 신 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항해		1 급 항 해 사	2 급 항 해 사 3 급 항 해 사 (2)	4 급 항 해 사 (2) 5 급 항 해 사 (2) 6 급 항 해 사 (4)
	선박기관		1 급 기 관 사	2 급 기 관 사 3 급 기 관 사 (2)	4 급 기 관 사 (2) 5 급 기 관 사 (2) 6 급 기 관 사 (4)

<p>비고 : ① 윗표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의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p> <p>②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이어야 한다.</p> <p>③ 6 급의 경력요건은 6, 7 급</p>	<p>의 경력요건에서 2년의 경력을, 8 급의 경력요건은 8, 9 급의 경력요건에서 1년 6월의 경력을 추가한다.</p> <p>(별표 8)</p> <p>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 이외의 기술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p>	

직렬	직급		5 급 이 상	6 · 7 급	8 · 9 급
	직류				
기 계	일반기 계	기계기술사	기계기사 1 급	기계기사 2 급	
		안전관리기술사 [기계안전]	건설기계기사 1 급 소방설비기사 1 급	건설기계기사 2 급 소방설비기사 2 급	
		생산관리기술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품질관리기사 1 급 산업안전기사 1 급 공정설계기사 1 급 용접기사 1 급 열관리기사 1 급 계량기사 1 급	품질관리기사 2 급 산업안전기사 2 급 용접기사 2 급	
	농업기 계	기계기술사 생산관리기술사 [품질관리] 안전관리기술사 [기계안전]	농업기계기사 1 급 기계기사 1 급 품질관리기사 1 급 자동차검사기사 1 급	농업기계기사 2 급 기계기사 2 급 품질관리기사 2 급 자동차검사기사 2 급	

직 별	직 급		5 급 이 상	6 · 7 급	8 · 9 급
	직 류	전			
	운	전	기계기술사 [교통차량] 안전관리기술사 [기계안전]	철도·차량기사 1급 제량기사 1급 자동차검사기사 1급 산업안전기사 1급 치공구설계기사 1급 중기정비기사 1급 공기조화 및 냉동 기계기사 1급 품질관리기사 1급 자동차정비기사 1급	철도·차량기사 2급 제량기사 2급 자동차설사기사 2급 산업안전기사 2급 치공구설계기사 2급 중기정비기사 2급 공기조화 및 냉동 기계기사 2급 품질관리기사 2급 자동차정비기사 2급
전 기	일반	전 기	전기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 [전기안전]	신호보안기사 1급 산업안전기사 1급 전기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1급 품질관리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 1급	신호보안기사 2급 산업안전기사 2급 전기기사 2급 전기공사기사 2급 품질관리기사 2급 소방설비기사 2급

직 령	직급		5 급 이 상	6 · 7 급	8 · 9 급	
	직류					
	전	사	전자기술사	전자기사 1급 계측제어기사 1급 품질관리기사 1급 전자제산기사 1급 전자제산기조직응용 기사 1급	전자기사 2급 계측제어기사 2급 품질관리기사 2급 전자제산기사 2급 전자제산기조직응 용기사 2급	
		원 자 력	에너지기술사	원자력기사 1급	원자력기사 2급	
섬	섬	섬	섬유기술사	섬유기사 1급 생사기사 1급 품질관리기사 1급 의류기사 1급	섬유기사 2급 생사기사 2급 품질관리기사 2급 의류기사 2급	
화	공	일반 화공	화공기술사 산업용융기술사 〔요업〕 안전관리기술사 〔화공안전〕	화공기사 1급 화학분체조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 1급 요업기사 1급 공업화학기사 1급 품질관리기사 1급 산업안전기사 1급	화공기사 2급 화학분체조기사 2급 소방설비기사 2급 요업기사 2급 공업화학기사 2급 품질관리기사 2급 산업안전기사 2급	
조	선	조	선	조선기술사	조선기사 1급 선박기계기사 1급	조선기사 2급 선박기계기사 2급
금	속	금	속	금속기술사	금속기사 1급 품질관리기사 1급	금속기사 2급 품질관리기사 2급
		야	금			

직렬	직급	5 급 이 상	5 · 7 급	8 · 9 급
채광	채광	광업기술자	광산보안기사 1급 광산기사 1급	광산보안기사 2급 광산기사 2급
농업	일반 농업	산업응용기술사 [식품제조 가공 농화학 종묘]	농화학기사 1급 원예종묘기사 1급 식품제조가공기사 1급 식품보호기사 1급	농화학기사 2급 원예종묘기사 2급 식품제조가공기사 2급 식품보호기사 2급
	잠업	석유기사 [생사]	석유기사 1급 생사기사 1급	석유기사 2급 생사기사 2급
임업	식물 발육	산업응용기술사 [종묘 임산가공 영닐 농화박]	임산가공기사 1급 조경기사 1급 임업종묘기사 1급	임산가공기사 2급 조경기사 3급 임업종묘기사 2급
	신림 보호		영림기사 1급	영림기사 2급
	가공 이용	국토개발기술사 [조경]	농화학기사 1급	농화학기사 2급
보건	보건	환경관리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산업응용기술사 [식품제조가공]]	식품제조가공기사 1급 환경기사 1급	식품제조가공기사 2급 환경기사 2급
환경	환경	환경관리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화공기술사 토목기술사 전기기술사]	지역및도시계획기사 1급 조경기사 1급 환경기사 1급 기상기사 1급 화공기사 1급 토목기사 1급 전기기사 1급	조경기사 2급 환경기사 2급 기상기사 2급 화공기사 2급 토목기사 2급 전기기사 2급

직렬	직급	5 급 이 상	6 · 7 급	8 · 9 급
		산업응용기술사 [식품제조가공 지 구 분 리 농 화 학 해양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농화학기사 1 급 해양기사 1 급 산업위생관리기사 1 급 식품제조가공기사 1 급	농화학기사 2 급 해양기사 2 급 산업위생관리기사 2 급 식품제조가공기사 2 급
수산	일 반	산업응용기술사 [수산제조] 해양기술사 환경관리기술사 [수산관리]	수산제조기사 1 급	수산제조기사 2 급
	수 산		수산양식기사 1 급	수산양식기사 2 급
	수 산		해양기사 1 급	해양기사 2 급
	계 조		환경기사 1 급	환경기사 2 급
	수 산		어로기사 1 급	어로기사 2 급
	증 식			
	어 로			
	수 산			
	지 도			
	수 산			
	물			
	검 사			
토목	일 반	토목기술사 국토개발기술사 [지역및도시계획]	토목기사 1 급	토목기사 2 급
	토 목		측지기사 1 급 건설안전기사 1 급 지역및도시계획기사 1 급 토목재료시험기사 1 급 계량기사 1 급	측지기사 2 급 건설안전기사 2 급 토목재료시험기사 2 급 계량기사 2 급
	농	토목기사 1 급 측지기사 1 급	토목기사 1 급 측지기사 1 급	토목기사 2 급 측지기사 2 급
	업			
	토	토목기사 1 급 측지기사 1 급	토목기사 1 급 측지기사 1 급	토목기사 2 급 측지기사 2 급
	목			
	목	토목기사 1 급 측지기사 1 급 [관개배수및농저조성 토질및기초시공 수자원, 구조]	토목기사 1 급 측지기사 1 급	토목기사 2 급 측지기사 2 급

직렬	직급		5 급 이 상	6 · 7 급	8 · 9 급
	직명	직류			
건축	건축	건축	건축기술사	건설안전기사 1급 건축기사 1급	건설안전기사 2급 건축기사 2급
측지	측지			측지기사 1급	측지기사 2급
통신 사	통신사		전기통신기술사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통신 기술	통신 기술		전기통신기술사	유선설비기사 1급	유선설비기사 2급
전송 기술	전송 기술		전자통신기술사	무선설비기사 1급	무선설비기사 2급
전자 통신 기술	전자 통신 기술		전자기술사	전자기사 1급	전자기사 2급
전산	전산		정보처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1급 전자계산기기사 1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1급	정보처리기사 2급 전자계산기기사 2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2급
비고 : ① 윗표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으로 본다. ② 6 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6 · 7 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8 급에 특 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8 · 9 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 6월의 기간 임용에 정직 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종 사한 자이어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직렬	직급		5 급 이 상	6 · 7 급	8 · 9 급
	직	급			
전기	원	차	방사선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5) 핵연료용질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불질취급자	
축산	축	산	수의사(5)	가축인공수정사	
보건	보	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5) 약사(5) 작업치료사(8) 임상병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위생사 1급(6) 위생시험사 1급(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4) 간호사(8) 조산사(8)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영양사 의무기록사	간호보조원
환경	환	경	의사 약사(5) 수의사(5) 위생사 1급(6) 위생시험사 1급(6)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비고: ① 월표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②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이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6등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5·7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8등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8·9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 6월의 기간 임용지성직의 업무의 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11)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동시에 필요한 자격증구분표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직렬	등급 분야	등급			
		5 등급	6·7 등급	8·9 등급	10 등급
철도 현업	기계	철도 동력차 기능장	철도동력차기관 정비기능사 1급 철도동력차전기 기능사 1급 객화차정비 기능사 1급 열차조작기능사 1급 위험물취급 기능사 1급 제탕기사 2급	철도동력차기관 정비기능사 2급 철도동력차전기 기능사 2급 객화차정비 기능사 2급 열차조작기능사 2급 위험물취급 기능사 2급 제탕기능사 2급 지게차운전 기능사 2급 3종지게차 조종사면허증	철도동력차기관 정비기능사보 철도동력차전기 기능사보 객화차정비 기능사보

직 렬 분 야	등 급				
	5 등 급	6 · 7 등 급	8 · 9 등 급	10 등 급	
				열판타기 능사 2급 저중기운전 기 능 사 2 급	
전기	전기기기 기능장 전기공사 기능장	전기기기 사 2 급 전기공사기사 2 급 전기공사기능사 1 급 전기기기 기능사 1 급 전력설비기능사 1 급 신호보안기사 2 급 신호보안기능사 1 급	전기기기 기능사 2 급 전기공사기능사 2 급 전기기기 기능사 2 급 살전설비기능사 2 급 송배전설비 기능사 2 급 변전설비기능사 2 급 신호보안기능사 2 급	내선공사기능사보 외선공사기능사보 전기기기 기능사보 동력배선 기능사보	
통신	유선설비 기능장	유선설비기사 2 급 무선설비기사 2 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 1 급 방송기기 기능사 1 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 1 급	무선설비기능사 2 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 2 급 방송기기 기능사 2 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 2 급 인쇄통신기능사 2 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보	

직렬	등급		5 등급	6·7 등급	8·9 등급	10 등급
	분야					
	토목			보선기능사 1 급 측량기능사 1 급	보선기능사 2 급 측량기능사 2 급	보선기능사보
	건축	건축시공 기능장 목공기능 장	건축기사 2 급 건축목공기능사 1 급 건축도장기능사 1 급 미장기능사 1 급 조적기능사 1 급 창호제작기능사 1 급 온돌기능사 1 급	건축기사 2 급 건축목공기능사 2 급 건축도장기능사 2 급 미장기능사 2 급 조적기능사 2 급 창호제작기능사 2 급 온돌기능사 2 급	건축목공기능사 2 급 건축도장기능사 2 급 미장기능사 2 급 조적기능사 2 급 창호제작기능사 2 급 온돌기능사 2 급	건축목공기능사보 건축도장기능사보 미장기능사보 조적기능사보 창호제작기능사보 온돌기능사보
	환경 관리			환경기사 2 급		
토목		토목제도 기능장 측량기능 장 토목재료 시험기능 장 콘크리트 기능장	토목기사 2 급 측지기사 2 급 토목재료시험 기사 2 급 토목재료시험 기능사 1 급 측량기능사 1 급 토목제도기능사 1 급 포장기능사 1 급 콘크리트기능사 1 급 도화기능사 1 급	토목기사 2 급 측지기사 2 급 토목재료시험 기사 2 급 토목재료시험 기능사 2 급 측량기능사 2 급 토목제도기능사 2 급 포장기능사 2 급 콘크리트기능사 2 급 도화기능사 2 급	토목재료시험 기능사 2 급 측량기능사 2 급 토목제도기능사 2 급 포장기능사 2 급 콘크리트기능사 2 급 도화기능사 2 급	포장기능사보 콘크리트기능사보

직명	등급 분야	등급			
		5 등급	6 · 7 등급	8 · 9 등급	10 등급
			지도제작기능사 1급 항공사진기능사 1급 화학분석기능사 1급	지도제작기능사 2급 항공사진기능사 2급 화학분석기능사 2급	
건축	건축제도 기능장 건축서공 기능장 목공기능 장	건축기사 2급 건축제도기능사 1급 건축목공기능사 1급 건축도장기능사 1급 미장기능사 1급 가구도장기능사 1급 광고도장기능사 1급	건축기사 2급 건축제도기능사 2급 건축목공기능사 2급 건축도장기능사 2급 미장기능사 2급 가구도장기능사 2급 광고도장기능사 2급	건축재료시험 기능사 2급 건축제도기능사 2급 건축목공기능사 2급 건축도장기능사 2급 미장기능사 2급 가구도장기능사 2급 광고도장기능사 2급	건축재료시험 기능사보 건축목공기능사보 건축도장기능사보 미장기능사보 가구도장기능사보 광고도장기능사보
통신	유선설비 기능장	유선설비기사 2급 무선설비기사 2급 전파통신기사 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 1급 반송기기기능사 1급	유선설비기사 2급 무선설비기능사 2급 전파통신기능사 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 2급 반송기기기능사 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보	

직 렬	등급 분야	등급			
		5 등급	6 · 7 등급	8 · 9 등급	10 등 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 1급 유선통신선로 기능사 1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 2급 인의통신기능사 2급 전화교환기능사 2급 음향영상기기 기능사 2급 유선통신선로 기능사 2급	음향영상기기 기능 사보 유선통신선로 기능 사보 유선통신기계 기능 사보
전 기		전기기기 기능장 전기공사 기능장	전기기사 2급 전기공사기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1급 전기기기기능사 1급 전력설비기능사 1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전기기기기능사 2급 발전설비기능사 2급 송배전설비 기능사 2급 변전설비기능사 2급	내선공사기능사보 외선공사기능사보 전기기기기능사보

적 별	등급 분양	5 등급	6 · 7 등급	8 · 9 등급	10 등급
		기계		신호보안기능사 1급	신호보안기능사 2급
		기계기사 2급	건설기계기사 2급	열관리기능사 2급	
		소방설비기사 2급	공기조화및 냉동기 계기사 2급		
		중기정비기사 2급	산업안전기사 2급		
	기계가공 기능장	제량기사 2급	제량기능사 2급		
	금형공구 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2급			
	기계정비 기능장	자동차점사기사 2급			
	관음기능장	원동기취급기능사 1급	원동기취급기능사 2급		
	배관기능장	위험물취급	위험물취급		
	용접기능장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재판기능장	금형공구기능사 1급	금형공구기능사 2급		
	자동차정 비기능장				
	중기정비 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공업배관기능사보	

직 명	등급 분야	등급			
		5 등급	6 · 7 등급	8 · 9 등급	10 등 급
	농기계 정비기능 장 고압가스 기계기능장 원동기 기능장	기계제도기능사 1 급 용접기능사 1 급	기계제도기능사 2 급 전기용접기능사 2 급	전측배관기능사 2 급 배관기능사 2 급 가스용접기능사 2 급 목수용접기능사 2 급 용접기능사 2 급 기계가공기능사 2 급 선반기능사 2 급 기계조립기능사 2 급 다듬질기능사 2 급 정밀측정기능사 2 급 고압가스생동기 계기능사 2 급 고압가스취급 기능사 2 급 자동차정비	전측배설기능사보 전기용접기능사보 가스용접기능사보 목수용접기능사보 선반기능사보 다듬질기능사보 자동차정비
	농기계 정비기능 장 고압가스 기계기능장 원동기 기능장	기계제도기능사 1 급 용접기능사 1 급	기계제도기능사 2 급 전기용접기능사 2 급	전측배관기능사 2 급 배관기능사 2 급 가스용접기능사 2 급 목수용접기능사 2 급 용접기능사 2 급 기계가공기능사 2 급 선반기능사 2 급 기계조립기능사 2 급 다듬질기능사 2 급 정밀측정기능사 2 급 고압가스생동기 계기능사 2 급 고압가스취급 기능사 2 급 자동차정비	전측배설기능사보 전기용접기능사보 가스용접기능사보 목수용접기능사보 선반기능사보 다듬질기능사보 자동차정비

직 권	등 급 분야	시			
		5 등 급	6·7 등 급	8·9 등 급	10 등 급
			기능사 1 보	기능사 2 급 농기계운전 기능사 2 급 모우터그레이더 운전기능사 2 급 로울러운전 기능사 2 급 직계차운전 기능사 2 급 아스팔트위 너석 운전기능사 2 급 아스팔트믹싱 프랜트운전 기능사 2 급 공기압축기운전 기능사 2 급 사리채취기운전 기능사 2 급 진정기중기운전 기능사 2 급 준설선운전 기능사 2 급 배석기운전 기능사 2 급 고압가스기계 기능사 2 급 원동기시공 기능사 2 급 영사기능사 1 급 영사기능사 2 급 열처리 기능사 1 급	기능사보
			고압가스기계 기능사 1 급 원 동기 시공 기능사 1 급 영사기능사 1 급 열처리 기능사 1 급		

<p>(비 고)</p> <p>① 별표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직렬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p> <p>② 직렬별·분야별 자격증과 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p>	<p>③ 6등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6·7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후 2년, 8등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8·9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후 1년6월의 기간 임용예정직의 업무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p>
---	---

2. 국가기술자격법에서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직렬	등급 분야	5 등급	6·7 등급	8·9 등급	10 등급
불선		1급불선사	2급불선사	3급불선사	특수급부선불선사
운전				제1종운전면허 제2종운전면허 (보통)	
선박		1급항해사	2·3급항해사	4·5·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기관		1급기관사	2·3급기관사	4·5·6급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p>(비 고)</p> <p>① 별표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직렬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p> <p>② 직렬별 자격증과 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p>	<p>③ 6등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6·7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후 2년, 8등급이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8·9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후 1년6월의 기간 임용예정직의 업무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p>
---	---

(별지 제 41 호 서식)

근무성적평정표 (기술직)

※ 근무성적평정의 최고점
5급 공무원: 45점
6급이하공무원: 35점

1. 소속: 국 과 (담당관실)
2. 직 급:
3. 평정기간: 부터 까지

※ 평정자·확인자는 해당단위 ○표시

평정요소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평정비율		평정기준		평정자 직위 성명				
		①직무의양	②직무의질	③전문지식 및기술	④창의력 및응용력	⑤이해· 판단력	⑥지도력	⑦책임성	⑧적극성	⑨철조성	⑩정신							⑪정신	⑫정신	
평정 기준	담당직무를 기간내 얼마나 처리 하였는가?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 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는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과 경험 은 어 떠 한 가?	직무를 효 과 적 으 로 개 선 하 는 사 건 이 있 는 가?	문제의 핵 심 을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부하직원의 목 표 를 정 확 히 파 악 하 고 담 당 직 무 에 충 실 하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담 당 직 무 에 대 하 는 의 사 를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담 당 직 무 에 대 하 는 의 사 를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담 당 직 무 에 대 하 는 의 사 를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담 당 직 무 에 대 하 는 의 사 를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담 당 직 무 에 대 하 는 의 사 를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담 당 직 무 에 대 하 는 의 사 를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담 당 직 무 에 대 하 는 의 사 를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담 당 직 무 에 대 하 는 의 사 를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담 당 직 무 에 대 하 는 의 사 를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담 당 직 무 에 대 하 는 의 사 를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담 당 직 무 에 대 하 는 의 사 를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담 당 직 무 에 대 하 는 의 사 를 정 확 히 이 해 하 고 적 절 한 결 론 을 내 는 능 력 은 어 떠 한 가?		
		평 정 자	확 인 자	평 정 자	확 인 자	평 정 자	확 인 자	평 정 자	확 인 자	평 정 자	확 인 자	평 정 자	확 인 자	평 정 자	확 인 자	평 정 자	확 인 자	평 정 자	확 인 자	평 정 자
비평정 자성명	5 급	3.02.52.01.54.03.02.52.0	3.01.52.01.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2.01.51.00.5
	5 급이하	3.02.52.01.03.02.52.01.0	2.53.01.51.0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51.00.80.4

1203-15 (4-3) 일()
'81.12.27 승인

1903

이화용지 (복합) 358mm x 380mm 60g/m²

◎서울특별시규칙제 2256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별표 1 의 징계양정
기준과 별표 2 의 개별징계기준에
따라"를 "별표 1 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별
표 3"을 "별표 2"로 하며, 동조
제 4 항중 "각 기관의 중점 정화대
상비위"를 "중점 정화대상 비위"
로 하고 동조 제 5 항을 삭제한다.

제 3 조 제 1 항중 "별표 3"을 "별
표 2"로 한다.

제 7 조 제 1 항중 "별표 4"를 "별
표 3"으로 하고, "징계의결 요구기
관에서 중점 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를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로 하며, 동조 제 2 항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2 조
제 6 항의 구성에 의하여 공무원 징
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하는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
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
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정밀사건을 의
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
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 의 의한
업무의 성질이 다른 업무와의 관련
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
무성적, 개인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판적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중 "당해기관의 중점 정화
대상으로 지정된 비위대상 외부와"
를 "중점 정화대상 비위 외부와"
로 하고, "별표 5호 서식"을 "별
지 서식"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

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고, 동표중 "제6조의 규정에"를 "제7조의 규정에"로 한다.

[별표 5]를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규칙제 2257 호

서울특별시지방전문직공무원관리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전문직공무원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지방전문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 ①지방전문직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점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비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목적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서의 각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장인하고, 계약서 2종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종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신청)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승인을 권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서안
3. 예산서 사본

4. 기타 자격 및 채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등)

제 4 조 (채용구비서류) ①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구비서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1항의 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 5 조 (채용기간) 연장승인신청
임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이 의하여 채용기간 연장승인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서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채용계약의 해지) 전문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채용계약해지일 1월전에 시장에게 채용제한 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 평가한다.

② 근무실적은 당해 전문직공무원의 근무부서의 장 (소속 기관의 1급 또는 4급상당의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이 평가하고, 소속국장, 국의 주무과장 및 인사담당관등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사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1급 또는 4급상등인 경우에는 그가 평가하고, 그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본청의 국장·국의 주무과장 및 인사담당관등이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근무실적평가내용은 별지 3 호서식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근무부서의 장이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근무실적평가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 조정등 전문직공무원이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수결정) ①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지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4 조 제 9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변표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에서 정하는 자격기준별 채용구분
 (이하 "채용구분"이라 한다)
 가호 내지 마호의 봉급액 범위안
 에서 담당업무의 난이도,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계약한 금액으로 하되, 1년이상
 근속한 채용구분 내호 내지 마호
 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은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결
 과에 따라 채용구분별 봉급상한액
 의 범위안에서 봉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수당은 지방공무
 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 9 조 (채용협의) 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계약의 내용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3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심
 정을 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자의 직무내용·책임도·근
 름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채용 계획서, 계약내용·채용조건에
 관한 서류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명할 관계서류를 내

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채용 또는
 채용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
 여야 한다.

② 내무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채용 예정자의 직무내용·책임도·
 근로도에 따라 채용에 정직의 자
 격기준·봉급액등 채용조건과 채용
 예정자의 자격여부를 판단·협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채용중인 자에 대한 계약의 변
 경)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문직공
 무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봉급지급액의 조정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
 하고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다.

(별지 제 1호서식)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 5 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기관을 "갑"이라 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당사자)

(갑)

(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제 2 조 (담당업무)

제 3 조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4 조 (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제 5 조 (신분) 전임, 비전임

제 6 조 (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가. 봉 급
나. 수 당
다. 지급방법

제 7 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영 제 7 조 각호의 1 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제 8 조 (복부) "을"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의 기관에 근무하며,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내지 제 56

조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 2 장 및 제 21 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 9 조 (편리의 국가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말명에 대한 복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

제 10 조 (기타 채용조건)

가. "을"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 조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 12 조 (비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채용 조건에 관한 특례)

이 계약서는 2 통을 작성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주 소

(별지 제 2 호 서식)

서울특별시

분류기호

수신

참조

제목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승인 신청

1.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근무기관	담당업무	채용신분	월보수 (봉급·수당)	예산확보 상황	소지자격
생년월일	채용기간	내용				

2. 채용의 필요성

서울특별시장

직인

고 시

◎서울특별시제 59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5 조 제 5 호의 규정이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 7. 6.

서울특별시 장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
- 2. 사업주체 : 성원건설 대표 전운수 및 발양상선 주택조합의 6 개조합
- 3.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235-4 의 17 필지

나. 대지면적 : 18,743 평

나. 건축면적 : 49,255.37 평

라. 규모 : 아파트 13-15 층 7동 496 세대

(상가 2층 1 동 및 부대 복리시설)

- 4. 사업시행기간 : 1988 년 6 월 ~ 1989 년 12 월

구 고 시

◎강동구고시제 59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이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

- 1. 사업명 : 강동 한진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공사
- 2. 사업주체 :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주택조합 대표 신문수의 2 개조합
- 3.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 : 강남구 길동 332 의 2 필지

나. 면적 : 16,848.63 평

다. 규모 : 아파트 9 층 2 동 162 세대 및 부대시설

- 4. 사업시행기간 : '88.7 ~ '89.9.
- 5. 도시계획시설 (도로) 환경 결정 조사 (도시계획법 83 조 규정 에 의한 대체임)

구분	등급	유별	폭원 (M)	연장 (M)	시점	종점	비고
기점	소로	3	6	108	강동구 길동 323-6	강동구 길동 323-6	폐지
신설	소로	3	6	108	강동구 길동 333-1	강동구 길동 233-1	신설

첨부: 설계도서(생략)

◎ 성동구고시제 1 호

도시계획사업(화교)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7(78.4.5) 호로 결정 및 같은 고시제 191 (81.5.25)호로 사업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시설(화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허가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경비과(전화 450-132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 7. 4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694-1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화교)
명칭: 성동국민학교 시설확충(복

발신 증축)

다. 사업시행지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694-1
성명: 학교법인 정철학원 이사장 장선옥

라. 사업의 규모: 부지 - 11,294.6 제곱미터
기존 - 74.05 제곱미터(특별직)
변경 - 117.11 제곱미터(지상 2층, 중 123.06 제곱미터)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88.7 - 88.12.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학교법인 정철학원. 기타 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학교법인 정철학원. 기타 없음

구 공 고

◎성동구공고제 11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

- 1. 성동구 고시 제 79 호 (87.12.11)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권 성동구 관내 대원학원에 대하여 사업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같은법 제 85 조 규정 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450-1385) 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 7. 4.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산 3-18 일대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 명칭 : 대원학원시설 확충 (장안관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면적 : 24,986 제곱미터

2) 사업내역 : 기존

- 면 6,336 제곱미터

- 면 6,732 제곱미터 (장안관 6층 396 제곱미터 증축)

라.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산 3-18

사업시행자 성명 : 학교법인 대원학원 이사장 이경호

마. 공사설계도서 : 준공도면 번호 (당략)

◎중로구공고제 20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

- 1. 건설부가 권장, 지적도시권 도시계획도르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요청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공람공포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기간내 중로구청 도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8. 7.

중 로 구 청 장

- 공 랑 요 지 -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나.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명칭	규 모	착공일	준공예정일	결정 및 개척고시일
채부동 37 ~ 필운동 171 간	채부동 37 ~ 필운동 171 간 도로개설공사	B=6m L=205m	88. 8.20	89.12.31	건고시 제 177 호 62년 12월 8일
연건동 195-11 ~인의동 8-2간	연지동~전동 대부고간 도 로개설공사	B=6m L=400m	88. 8.20	89.12.31	건고시 제 177 호 62년 12월 8일

다. 사업시행자: 종로구청장
라. 수용할 토기(건물)조서 및 계
획도면: 생략
아. 공랑장소: 종로구청 토목과

바. 공랑공고기간: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사. 기타 상이한 사항은 종로구청
토목과(734-3152) 문의.

사 령

령 제 279 호

국무총리 비서실

서기관

문 병 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1988.7.4

대 통 령

© 1988년 7월 7일

4급 공무원 전도

령 제 278 호

성 명	발 령 사 랑	현부서	직 급
문 병 권	새문문화회관 서우과장	내 무 국	지 방 서 기 관

◎ 1988 년 7 월 6 일 4 급 공무원 전보 명 제 280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부서	직 급
박용태	전산담당관	남부국	지방사무관
◎ 1988 년 7 월 7 일 7 급이하공무원징계및결구처분 명 제 277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부서	직 급
이태중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3 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서부건설사업소	지방토목과원
전석원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3 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	지방과계장
나권호	불문경교(서울특별시 제 2 인사위원회 의견 사항)	남부건설사업소	지방기초원
◎ 1988 년 7 월 11 일 5 급기술직공무원전보 명 제 281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부서	직 급
이문기	총로구	남양주	지방건축과과
서울특별시			